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445호 2018. 4. 16. (월)

【조 례】

- 정선군 조례 제2630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5
- 정선군 조례 제2631호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9
- 정선군 조례 제2632호 정선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11
- 정선군 조례 제2633호 정선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20
- 정선군 조례 제2634호 정선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
례.....30
- 정선군 조례 제2635호 정선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
례.....36
- 정선군 조례 제2636호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40
- 정선군 조례 제2637호 정선군 자가발전 모노레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41
- 정선군 조례 제2638호 정선군 예미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60
- 정선군 조례 제2639호 정선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63
- 정선군 조례 제2640호 정선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69
- 정선군 조례 제2641호 정선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81
- 정선군 조례 제2642호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83
- 정선군 조례 제2643호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86

- 정선군 조례 제2644호 정선군농업인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89
- 정선군 조례 제2645호 정선군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 조례 폐지조례.....90

【규 칙】

- 정선군 규칙 제1302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92
- 정선군 규칙 제1303호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94
- 정선군 규칙 제1304호 정선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147

조 례

제243회 정선군의회(2018. 04. 06.)에서 의결된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4월 16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630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01명” 을 “606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590명” 을 “595명 ” 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선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직급별 \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606	606				
정무직계	1	1				
군수	1	1				
일반직 계	581	581				
4급	1	1				
4급·5급	3	2		1		
5급	25	10	2	3	1	9
6급 이하 계	551	551				
전문경력관 계	1	1				
연구직 계	4	4				
연구관						
연구사	4	4				
지도직 계	20	20				
지도관	2			2		
지도사	18	18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601명</u> 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u>590명</u> 2. (생략)	제2조(정원의 총수) ----- ----- ----- <u>606명</u> 이며----- -----. 1. ----- <u>595명</u> 2. (현행과 같음)

제안이유

- 가. 동계올림픽 대외협력 기능 축소에 따른 정원 감원.
- 나. 일자리지원, 치매안심센터, 맞춤형복지, 전통시장 육성, 교통단속(특사경), 개발행위 인허가, 병해충 예찰방제 전담인력 증원 등 정부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

주요내용

- 가. 정선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안 제2조)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 601명→606명 (증 5명)
 - 집행기관의 총수 : 590명→595명 (증 5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1명 (변동 없음)
- 나. 정선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의 일부 조정(별표 3)
 - 4급·5급 : 본청(2), 직속기관(1) : 변동없음
 - 5급 : 본청(10), 의회(2), 직속기관(3), 사업소(1), 읍면(9) : 변동없음
 - 6급이하 : (547) ⇒ (551) (증 4명)
 - 지도직 : (19) ⇒ (20) (증 1명)

제243회 정선군의회(2018. 04. 06.)에서 의결된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4월 16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631호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7. 청소행정·폐기물관리 및 쓰레기매립장 관리 운영

제1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지원 총괄

제1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동계올림픽 청산 계획수립 및 시행

제1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26조제7호 중 “및 쓰레기 매립장 관리” 를 “관리” 로 한다.

제27조 중 “읍·면사무소 및” 을 “읍·면”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간) 동계올림픽지원단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실·과·단 등)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실·과 외에 다음 각 호의 한시기구를 둔다.</p> <p>1. (생략)</p> <p>2. <u>군의 규제개혁 사무를 분장하는 부군수 직속 규제개혁추진단</u></p> <p>③ (생략)</p>	<p>제3조(실·과·단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0조(환경산림과) 환경산림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p> <p>1. ~ 6. (생략)</p> <p>7. <u>청소행정·폐기물관리</u></p> <p>8. ~ 14. (생략)</p>	<p>제10조(환경산림과)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청소행정·폐기물관리 및 쓰레기매립장 관리 운영</u></p> <p>8. ~ 14. (현행과 같음)</p>
<p>제13조(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p> <p>1. (생략)</p> <p>2. <u>지역경제 활성화</u></p> <p>3. ~ 16. (생략)</p>	<p>제13조(지역경제과)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지원 총괄</u></p> <p>3. ~ 16. (현행과 같음)</p>
<p>제16조(동계올림픽지원단) ① 동계올림픽지원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p> <p>1. <u>동계올림픽 관련 각종행사</u></p>	<p>제16조(동계올림픽지원단) ① ----- -----.</p> <p>1. <u>동계올림픽 청산 계획수립</u></p>

<p><u>및 대회지원</u></p> <p>2. <u>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대회 시설 사업지원</u></p> <p>3. ~ 7. (생략)</p> <p>제17조(규제개혁추진단) <u>규제개혁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u></p> <p>1. <u>규제개혁 과제 발굴·개선 등 규제개혁 종합 추진</u></p> <p>2. <u>규제등록 및 관리 총괄</u></p> <p>3. <u>기업 등 지역현장 규제 애로 사항 발굴 및 제도개선</u></p> <p>4. <u>행정제도 개선업무</u></p> <p>5. <u>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소관업무</u></p> <p>제26조(소관사무) <u>수질환경사업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u></p> <p>1. ~ 6. (생략)</p> <p>7. <u>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및 쓰레기 매립장 관리 운영</u></p>	<p><u>및 시행</u></p> <p><삭제></p> <p>3. ~ 7. (현행과 같음)</p> <p><삭제></p> <p>제26조(소관사무)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 <u>관리</u> -----</p>
<p>8. (생략)</p> <p>제27조(설치) 제2조에 따라 설치하는 <u>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u>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p>	<p>8. (현행과 같음)</p> <p>제27조(설치) ----- <u>읍·면</u> ----- ----- -----.</p>

제안이유

동계올림픽 업무 청산을 위한 한시기구(동계올림픽지원단) 존속기간 연장 등
군정 주요현안을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규제개혁추진단 한시기한 종료에 따른 기구 및 사무분장 삭제
(안 제3조, 안 제17조)
- 나. 환경산림과 및 수질환경사업소 분장사무 조정(안 제10조, 안 26조)
 - 쓰레기매립장 관리 운영 업무를 사업소에서 환경산림과로 조정
- 다. 지역경제과 신규 사무 분장(안 제13조)
 - 일자리지원 업무 신규 분장
- 라. 동계올림픽지원단 분장사무 조정(안 제16조)
 - 올림픽 청산 업무 신설 및 대외협력 업무 삭제
- 마. 동계올림픽지원단 존속기한을 2018. 12. 31.까지 연장(안 부칙)

제243회 정선군의회(2018. 04. 06.)에서 의결된 정선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4월 16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632호

정선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10만원” 을 “20만원”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 3호 단서에 따라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 출세액이 <u>10만원</u> 이하인 경우 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 과·징수할 수 있다.	제16조(납기)----- ----- ----- ----- <u>20만원</u> ----- ----- ----- -----.

제안이유

「지방세법」의 개정(법률 제15292호, 2017.12.26.공포, 2018.1.1시행)에 따라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액을 한꺼번에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주택분 재산세액의 일시 부과 한도 확대(안 제16조)
- 10만원 이하 → 20만원 이하

제243회 정선군의회(2018. 04. 06.)에서 의결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4월 16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633호

정선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2. "세무부서장"이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 3. "고충민원"이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 4.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5.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지방세기본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법·영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납세자보호관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설치)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외 군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둔다.

②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 라고 한다)는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자를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급기준: 6급

2. 경력기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요구 중인 자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일반사면을 받지 않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있는 자는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영 제5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과제 발굴

2. 납세자권리현장의 제정·개정 등 납세자권리현장에 관한 사항

3.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등 지방세 불복 업무 접수 및 처리

4.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6조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요구

3.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5.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권한을 세무부서장에게 행사한다.

제3장 납세자보호 업무의 심의

제8조(안건 심의 등) ① 고충민원 등 심의는 법 제14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

1.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처분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안건
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제2항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은 법·영에 따른다.

제4장 고충민원

제10조(고충민원 처리준칙)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고충민원의 대상) 고충민원의 대상은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이 그 대상이다.

제12조(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이 계류 중인 사항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이 결정된 사항
6. 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항
7.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신청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고충민원의 분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충민원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1. 군수가 결정·처분한 사안인 경우
2. 군수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안인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고충민원의 신청기간) ①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방세 부과에 제척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 ② 고충민원의 대상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기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등) ①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사실 확인·위원회 심의·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6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2회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은 종결 처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
- ③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7조(신청의 취하) 민원인은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세무부서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8조(불이익변경금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에게 고충민원의 신청 전보다 불리한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불복 제외대상)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법 제89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5장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제20조(조사기간 연장신청) ①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부서장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 또는 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범칙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 포함)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1조(연장신청에 대한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제20조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1.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제22조(세무조사 연기신청) 세무조사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23조(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22조에 따른 연기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 한다.

1.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신청인이 요구한 기간을 단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6장 권리보호 요청

제24조(권리보호요청 처리 기본원칙) 권리보호요청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납세자보호관은 법·영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며, 세무부서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25조(고충민원과 구분) ① 권리보호요청은 제2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고충민원과 구분된다. 다만, 신속한 후속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되어 긴급히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으

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② 권리보호요청은 주로 처분을 위한 절차 진행 중 또는 집행이 예정된 경우에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제출되는 민원으로 한다.

제26조(요청 대상) ①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공무원의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법·영 및 지방세관계법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지방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하는 행위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 일반 지방세 행정제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소명자료 제출·고충민원·불복청구·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영 및 지방세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 제외한다)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제27조(권리보호요청 기한) 권리보호요청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할 수 있다.

제28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권리보호요청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7일(초일은 산입

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실 확인·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 이내로 한다.

제7장 납세자권리현장

제29조(납세자권리현장 제정) ① 군수는 법 제76조에 따라 납세자권리현장을 제정·고시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권리현장의 제정·개정 등 납세자권리현장에 관한 사항을 전담한다.

제30조(납세자권리현장 준수)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권리현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현장의 취지와 내용을 교육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

제31조(지방세 제도개선 의견)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세무상담 및 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하여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법령의 개정 등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민원 발생원인 분석 이외에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찾아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제도개선 과제 관리) 납세자보호관은 제도개선 과제를 분석하여 세무부서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관리한다.

제9장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제33조(업무의 범위) 군수는 영 제51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업무 이외에도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에 따른 기한의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2.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3.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제34조(기한의 연장신청) 법 제26조에 따른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5조(기한의 연장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 및 사실 확인 결과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 기한의 연장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기한의 연장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제36조(가산세의 감면신청)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7조(가산세의 감면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의견 및 사실 확인 결과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가산세의 감면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가산세의 감면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제38조(징수유예 등 신청)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9조(징수유예 등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 사실 확인 결과 및 납세담보의 제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납세자보호관 업무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선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부서, 업무 및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안제7조까지)
- 나.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부터 안 제19조까지)
- 다.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0조부터 안 제28조까지)
- 라. 납세자권리헌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 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9조부터 안 제39조까지)

제243회 정선군의회(2018. 04. 06.)에서 의결된 정선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4월 16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634호

**정선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정선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이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금과 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을 방지하며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급공사”란 정선군(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정선군이 50%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을 포함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2. “건설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지역건설근로자”란 건설근로자로서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및 그 밖에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수급인이 근로의 대가 및 건설기계 임대료로 지역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와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급여·휴업수당 및 건설기계 임대료 등을 말한다.
6. “건설기계 임대료”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 체결하여 지급하는

기계 경비를 말한다.

7. “체불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와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청산·지급되지 못한 임금과 건설기계를 사용한 후 미지급된 임대료를 말한다.
8.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감리원 등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점검·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수급인”이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사람으로서,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10. “사업주”란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
11.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
13. “총공사비”란 관급자재비와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4. “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라 한다)”이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조달청장이 구축·운영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15.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이하 “강원대금알림e”라 한다)”이란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과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할 때 수급인·하수급인·노무자 및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구분해서 지급하고 각 이해 당사자들이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강원도지사가 구축·운영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정선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에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수급인과 하수급인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종합공사 : 추정가격 2억원 이상
2. 전문공사 및 기타 : 추정가격 1억원 이상
3. 그 밖에 군수가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제4조(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등) ① 군수는 수급인에게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 ② 수급인은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고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수급인은 「정선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3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지역 내 생산제품을 사용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 군수와 수급인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선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공동수급 등 지역 업체 참여를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제3장 체불임금 등 방지

제6조(수급인의 책무) 수급인은 지역건설산업 발전과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계약체결 시 임금 지불 서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7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적절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6항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합의서를 체결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 제도의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 하도급지킴이 또는 강원대금알림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4호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지급내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7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등 확인) ① 공사감독자는 제6조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통하여 청구 및 지급내역 등을 확인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을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대가지급 사전통지와 공지) ① 군수는 수급인의 청구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전에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지급계획을 문자 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예고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지급 사실을 현장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장 하도급업체의 보호

제9조(하도급대금 직불제 권장) 군수는 계약체결 시 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 직불동의서 작성을 권장한다.

제10조(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이행) 군수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이행을 권장한다.

제11조(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확인) ① 수급인은 군수로부터 공사대금(선금과 기성금을 포함한다)을 수령한 경우 15일 이내 하도급대금 등을 하수급인에게 현금(계좌이체)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이 제1항의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지급일로부터 5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이내에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거쳐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지킴이 또는 강원대금알림e를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서면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④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을 하수급인의 수령내역과 비교하여 대금을 실제 수령했는지 여부를 증빙서류(통장사본 등)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강원대금알림e의 적용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에 대하여 강원대금알림e 또는 하도급 지킴이(이하 “강원 대금알림e 등” 이라한다)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민간투자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

2. 그 밖의 각 이해당사자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군수가 강원대금알림e 등의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강원대금알림e 등을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군수가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수급인, 하수급인, 노무자, 장비·자재업자 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에도 반드시 강원대금알림e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주된 사업을 계약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강원대금알림e 등이 원

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강원대금알림e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의 요청에 따라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에 대한 대금 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2.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어음 등 7일이상인 유가증권을 지급한 경우
3. 수급인의 파산, 부도, 지급정지 및 등록·면허취소 등 그 밖에 유사한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수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수급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불해서는 안 되는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4조(하도급 관계의 적정성 확보) ① 하도급 계약 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 계약 내용이 적절치 않은 경우 군수는 하도급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군수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②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접수하면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계약 부서에 통보하고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신고센터 설치) ① 군수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저가하도급 등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6조(근로자 상담) 군수는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 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협조 및 홍보) ① 군수는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건설업 협회와 건설업자 및 고용노동(지)청 등 관계기관·단체와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군 홈페이지 등 그 밖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임금 지급 우수 사업체로 홍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한 후 임금체불업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8조(자료제출)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관계 법규의 준수) 군수는 제3조의 공사를 시행하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관계법규 준수 여부를 관리하여야 하고, 해당 법령 및 조례에 위반할 경우 즉각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규에 따라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실적평가 및 관리 등) ① 군수는 매년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 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체에 대하여는 관급공사 수주기회가 확대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고, 부진한 사업체는 수주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계약 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관급공사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임금 지불 서약서(제6조 관련)

저희 업체에서는 정선군에서 발주한 공사·용역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 할 것이며 정선군의 정책인 체불임금 없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설계서상의 임금(건설기계임대료포함)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정선군(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2호서식]

- 「하도급지킴이」 이용 약약서
- 「강원대금알림e」 이용 약약서

(제12조관련)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또는 강원대금알림e를 이용(‘표준하도급 계약서 ‘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 또는 강원대금알림e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 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또는 강원대금알림e를 이용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정선군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정선군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정선군(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체불임금(임대료) 신고서(제15조 관련)

신고자	성명		연락처	☎ :
	주소			휴대폰 :
신고방법		서면신고/ 전화신고		
※ 채사 불업 임장 금	업체명			
	주소			
신고내용 (상담내용)				

※ 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일 경우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사업장을 기재한다.

정선군(분임)재무관 귀하

제안이유

- 가. 「근로기준법」·「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계관리법」·「건설기술진흥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 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등 지역경기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며,
- 다. 건설업체의 체불임금방지 및 사회적 약자인 하수급인 보호 등을 위하여 신설 구축·운영되는 「강원대금알림e」의 전자적 시스템 도입에 따라,
- 라. 대금지급 확인시스템(강원대금알림e)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 조항 신설 등으로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강화 및 조례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제명 변경
 - ‘정선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정선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변경
- 나. 지역건설근로자·지역건설기계 우선고용 및 사용과 지역 내 생산품을 적극 사용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다. 수급인의 책무,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이행,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확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등 규정(안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 라. 강원대금알림e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제243회 정선군의회(2018. 04. 06.)에서 의결된 정선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4월 16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635호

정선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정선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선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여성대상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여성대상 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여성대상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 관계법령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연대의 설치) ① 군수는 아동·여성대상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선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역연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와 실무사례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지역연대의 목적)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여성과 아동을 위한 안전망 구축
2. 아동·여성 안전 확보를 위한 민관 협력·연계와 자원·정보교류 기반 마련
3. 가정폭력과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4. 가정폭력과 성폭력 관련 사례관리 협의

제6조(지역연대의 기본원칙) ① 지역연대는 아동과 여성의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특성과 필요를 파악하고, 지역사회의 인적·물적·제도적 자원을 고려해야 한다.

- ② 지역연대의 구성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공공기관과 민간의 참여와 연대를 보장해야 한다.
- ③ 지역연대의 운영은 조직과 의사결정 절차에서 구성원의 의견교환과 합의결정의 합리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과 역할)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연대 운영계획의 수립과 이행점검
2. 아동·여성보호 관련기관의 정보교류와 협력체계 구축
3. 성폭력·가정폭력 안전프로그램 운영 협력
4.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안전지표 관리
5. 성폭력·가정폭력 위기·피해아동·여성 긴급구조 지원
6. 지역연대 사례관리 및 피해회복을 위한 후속조치의 지원
7. 아동·여성안전을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8. 지역사회 안전지도 제작과 프로그램 보급
9. 지역의 아동·여성 피해 및 가해실태 조사와 안전확보방안 연구지원
10. 지역연대 구성원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제2장 지역연대의 구성

제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아동·여성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한다.

1.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및 예방 관련기관 또는 시설
2. 아동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청소년상담지원시설

4.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
 5.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6. 교육청,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7.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형사사법기관
 8. 지역주민대표
 9. 학계전문가
 10.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1. 이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③ 운영위원회는 제2항에 규정된 참여기관 및 시설에서 5개 유형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협의·조정한다.

1.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
2. 아동·여성 안전을 위한 사업
3. 지역연대 구성원간 교류 및 협력체계 관련 사안
4.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시설 간 지역연대와 관련된 업무
5. 실무사례협의회 회부사안

제10조(운영위원의 해촉) ① 운영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에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제11조(운영위원회 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여성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2조(실무사례협의회 구성) ① 지역연대에는 제8조제2항의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실무전문가와 아동·여성권익증진 및 사회복지업무를 담당 하는 주무관이 참여하는

실무사례협의회(이하 “사례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사례협의회장은 운영위원회가 정한 운영위원이 겸한다.

제13조(사례협의회 업무) 사례협의회는 지역내 아동·여성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관련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과 사례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제3장 회의운영

제14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운영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제15조(운영위원회 회의안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건으로 심의한다.

1. 중앙정부기관에서 공공전달체계를 통해 요청한 안건
2. 지역연대 참여기관이나 지역 내 기관·단체에서 지역현안으로 제시한 안건
3. 지역연대 참여기관이나 지역 내 기관·단체 실무자, 지역주민이 지역 현안으로 건의한 안건
4. 사례협의회에서 제안한 안건

제16조(운영위원회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가부동수인 때에는 운영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7조(회의기록과 보고) ① 운영위원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는 운영위원회 간사가 회의 일지를 작성하고 보관한다.

② 사례협의회 회의는 사례협의회장이 회의일지를 작성·보관한다.

③ 사례협의회장은 회의결과를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서 보고한다.

④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역연대 참여기관과 의결내용과 관련된 지역 내 기관·단체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⑤ 지역 내 기관단체나 지역주민이 제기한 안건이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었을 경우 그 회의결과를 해당 기관·단체나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8조(사례협의회 회의운영) 사례협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19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아동·여성대상 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여성대상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21조(필요경비 또는 수당)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위원과 사례협의회원에게 지역 연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가. 아동과 여성의 안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활동에 관한 법령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를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아동·여성 대상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아동·여성안전 지역 연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지역연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제7조)
- 나. 지역연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책무와 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11조)
- 다. 실무사례협의회의 구성 및 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13조)
- 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 및 회의 운영방법과 사례협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18조)
- 마. 아동·여성대상 폭력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 바. 운영위원회 및 사례협의회의원에게 필요한 경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있도록 함(안 제21조)

제243회 정선군의회(2018. 04. 06.)에서 의결된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4월 16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636호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전단 중 “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 을 “사람” 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시행령” 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법 제20조” 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0조” 로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 를 “50퍼센트” 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군 관내 군부대, 경찰서 등에서 복무 중 사망한 사병·의무경찰, 이 경우 공설 화장시설에만 적용한다.

제10조제4항 중 “제2항” 을 “제3항” 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제2항 중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하되, 15년 단위로 3회에 한정하여” 를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사용기간” 을 각각 “설치기간”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u>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u>으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하여 해당 유공자증 등을 받은 본인(유족 등 가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요건은 별표 1과 같다.</p>	<p>제 2 조 (정 의) ----- ----- -- <u>사람</u> ----- ----- ----- -----.</p>
<p>제3조(수급계획)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u>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u> 제4조에 따른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p>	<p>제3조(수급계획) ① ----- 「<u>장사 등</u> <u>에 관한 법률 시행령</u>」 ----- ----- ----- --.</p>
<p>② (생략)</p> <p>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② (생략)</p> <p>③ 군수는 제2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u>법 제20조</u>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장사 등</u> <u>에 관한 법률</u>」(이하 “<u>법</u>”이라 한다) 제20조----- -----.</p>

<p>④ (생 략) 제10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등) ①·② (생 략)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외자의 경우에는 공설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그 외 장사시설의 사용료는 <u>50%</u> 감면한다. 1.·2. (생 략) <u><신 설></u></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사용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⑤ (생 략) 제20조(분묘 및 봉안묘의 사용기간) ① <u>분묘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되, 15년 단위로 3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u> ② <u>봉안묘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되, 15년 단위로 3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u></p>	<p>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u>50퍼센트</u> ----- -----.</p> <p>1.·2. (현행과 같음) 3. <u>군 관내 군부대, 경찰서 등에서 복무 중 사망한 사병·의무경찰, 이 경우 공설화장 시설에만 적용한다.</u></p> <p>④ ----- <u>제3항</u>----- ----- -----.</p> <p>⑤ (현행과 같음) 제20조(분묘 및 봉안묘의 사용기간) ① <u>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 연장할 수 있다.</u> ② ----- <u>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u> -----.</p>
--	--

<p>③ 제1항 및 제2항의 <u>사용기간</u>을 연장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연장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③ ----- <u>설치기간</u>----- ----- -----.</p>
<p>④ 합당한 분묘의 <u>사용기간</u>은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p>	<p>④ ----- <u>설치기간</u>----- -----.</p>

제안이유

- 가. 「장사 등에 관한 법」 제19조 분묘의 설치기간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 나.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제1항 규정에 의거 군 관내에서 복무 중 사망한 군인(사병)·경찰(의무경찰)의 명예와 유가족 예우를 위한 내용 신설

주요내용

- 가. 분묘 및 봉안묘의 설치기간, 연장횟수 개정
 - 조례 제20조제1항 및 2항 설치기간 “15년”을 “30년”으로 확대개정 하고,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장 “15년 단위로 3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할 수 있다.”로 개정
- 나. 군 관내 군부대, 경찰서 등에서 복무 중 사망한 사병·의무경찰 화장비용 감면제도 신설
 - 조례 제10조제3항 “3. 군 관내 군부대, 경찰서 등에서 복무 중 사망한 사병·의무경찰 등, 이 경우 공설화장시설에만 적용한다.”를 신설

제243회 정선군의회(2018. 04. 06.)에서 의결된 정선군 자가발전 모노레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4월 16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637호

정선군 자가발전 모노레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자가발전 모노레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7조제1항에 제6호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12. 정선군 자가발전 모노레일 관리·운영

제안이유

정선군 자가발전 모노레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정선군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추진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정선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사업의 범위에 “정선군 자가발전 모노레일 관리·운영” 추가

제243회 정선군의회(2018. 04. 06.)에서 의결된 정선군 예미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4월 16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638호

정선군 예미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예미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 예미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를 “정선군 예미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정선군 예미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 을 “공공폐수처리시설” 로 하고, “공동처리구역” 을 “공공폐수처리구역(이하 “처리구역” 이라 한다)” 로 한다.

제3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이라 한다)” 를 “「물환경보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 로 하고, “공동처리 구역” 을 “처리구역” 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법률” 을 “법” 으로 한다.

제12조 중 본문 및 제6호의 “법률” 을 모두 “법” 으로 하고, “배출기준” 을 “배출허용기준” 으로 한다.

제13조 중 “폐수종말처리장” 을 “처리시설” 로 “법률” 을 “법” 으로 하고, “폐수배출 허용기준” 을 “배출허용기준” 으로 한다.

제14조 제명 중 “배출기준” 을 “배출허용기준” 으로 본문 중 “관계법령” 을 “관계 법률” 로 하고, 제1호 중 “배출기준” 을 “배출허용기준” 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제27조에 따른 가산금 및 증가산금” 을 “제28조에 따른 가산금” 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비용부담금” 을 “부담금” 으로 한다.

제24조 중 “배출기준” 을 “배출허용기준” 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가산금 및 증가산금” 을 “가산금” 으로 한다.

제26조부터 제2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강제징수) ① 사업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2조제2항 중 “비용부담금” 을 “부담금” 으로 한다.

제35조제1호 중 “폐수처리시설” 을 “처리시설” 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2까지를 별표와 같이 하고,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정선군 예미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48조의2에 따라 정선군 예미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사업자(장)”란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 공동처리구역에 입주하여 폐수 또는 생활오수를 배출하는 사업자(장)를 말한다.</p> <p>2. ~ 6. (생략)</p> <p>제3조(처리구역) 정선군 예미농공단지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동처리 구역으로</p>	<p><u>정선군 예미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정선군 예미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 -----.</p> <p>1. ----- 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구역(이하 “처리구역”이라 한다)----- -----.</p> <p>2. ~ 6. (현행과 같음)</p> <p>제3조(처리구역) ----- ----- 「물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 ----- 처 리구역-----.</p>

<p>한다.</p>	
<p>제4조(처리시설의 관리·운영) ① (생 략)</p> <p>② 군수는 제1항 처리시설의 효율적 인 운영관리와 전문성 제고를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u>법률</u> 제48조제1항 각 호의 자에 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 다.</p>	<p>제4조(처리시설의 관리·운영) ①(현 행과 같음)</p> <p>② ----- ----- -----<u>법</u>----- ----- -----.</p>
<p>③ ~ ⑤ (생 략)</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5조 ~ 제11조 (생 략)</p>	<p>제5조 ~ 제11조 (현행과 같음)</p>
<p>제12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및 오 염물질) <u>법률</u> 제12조제3항에 따 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 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자가 배출하는 처리대상 오 염물질의 배출농도 기준은 제13 조에 따른 <u>배출기준</u>에 따른다.</p>	<p>제12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및 오 염물질) <u>법</u> ----- ----- ----- ----- -----<u>배출허용기준</u>-----.</p>
<p>제1호~ 제5호 (생 략)</p>	<p>제1호~ 제5호 (현행과 같음)</p>
<p>6. <u>법률</u> 시행규칙 제26조 별표10 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 오염물질</p>	<p>6. <u>법</u> ----- ----- -----</p>
<p>제13조(배출허용기준) 폐수 등 배출 사업자는 제12조에 따라 처리시설 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인 경우 <u>폐 수종말처리장</u> 유입수질은 설계기 준(별표 1) 이내로 배출하여야 하 며, 설계기준을 현저히 초과하여 배출함으로써 처리시설 기능이 상 실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머</p>	<p>제13조(배출허용기준) ----- ----- ----- <u>처리</u> <u>시설</u> ----- ----- ----- ----- -----<u>법</u>-----</p>

<p>지 오염물질은 <u>법률 제32조</u>에 따라 <u>폐수배출 허용기준</u> 이하로 자체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p>	<p>-- <u>배출허용기준</u> ----- -----.</p>
<p>제14조(<u>배출기준</u> 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알리고 <u>관계법령</u>에 따라 규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p>	<p>제14조(<u>배출허용기준</u> 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 ----- ----- ----- -----<u>관계 법률</u> ----- -----.</p>
<p>1. 제13조에 따른 <u>배출기준</u>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p>	<p>2. ----- <u>배출허용기준</u>----- ----- ----- -----</p>
<p>2. (생략)</p>	<p>2. (현행과 같음)</p>
<p>제15조 ~ 제21조 (생략)</p>	<p>제15조 ~ 제21조 (현행과 같음)</p>
<p>제22조(부담금의 징수유예 등) ① ~ ② (생략)</p>	<p>제22조(부담금의 징수유예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유예 또는 분할 고지한 경우에는 <u>제27조</u>에 따른 <u>가산금</u> 및 <u>증가산금</u>을 징수함에 있어 징수유예(분할고지 포함)기간은 기간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③ ----- -----<u>제28조</u>에 따른 <u>가산금</u>----- ----- -----.</p>

<p>제26조(가산금 및 증가산금) ①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p>	<p><삭 제></p>
<p>②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증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증가산금의 합계액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p>	<p><삭 제></p>
<p>제27조(독촉 등)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되 그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p>	<p><삭 제></p>
<p>제28조(강제징수)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를 할 수 있다.</p>	<p>제28조(강제징수) ① 사업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해서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p>

제29조 (생 략)
 제30조(권리의무의 승계) 처리구역에서 폐수나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 및 대지의 소유권 또는 권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취득 전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31조 (생 략)
 제32조(배수설비 등 시설설치의무 불이행) ① (생 략)
 ② 배수설비 미설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배출되는 오·폐수가 처리시설에 유입될 경우에는 비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폐수량의 산정방법은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 ~ 제34조 (생 략)
 제3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관련 사항의 검토
 2. ~ 3. (생 략)
 제36조 (생 략)

제29조 (현행과 같음)
 <삭 제>

제31조 (현행과 같음)
 제32조(배수설비 등 시설설치의무 불이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 부담금 -----

 -----.

제33조 ~ 제34조 (현행과 같음)
 제35조(기능) -----
 -----.
 1. 처리시설 -----

 2. ~ 3. (현행과 같음)
 제36조 (현행과 같음)

[별표 1]

예미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수질
(제13조 관련)

제13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수질은 다음과 같다.

(단위 : mg/L)

수질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비 고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	450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350	
부유물질량 (SS)	350	
총질소 (T-N)	60	
총 인 (T-P)	10	

[별표 2]

예미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산출기준
(제15조 관련)

제15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부담기준 : 부지면적과 오·폐수 배출량의 부하량에 따라 결정한다.
- 2) 산출근거

$$\text{○ AS} = 0.2M \frac{\text{KI}}{\text{KT}} + 0.8 M \frac{\text{QOI}}{\text{QOT}}$$

┌기본요금┐ ┌처리요금┐

- AS : 업소별 부담금액

- M : 월간 유지관리비

직접경비 + 간접경비(직접경비의 10%) + 감가상각비

- KT : 전체 입주업소 부지면적

- KI : 개별 입주업체 부지면적

- QOT : 총 오·폐수 배출오염 부하량

· 폐수 : BOD + COD

$$\frac{\text{—————}}{2} + \text{SS}$$

2

· 오수 : BOD + SS

- QOI : 개별업소 오·폐수 배출 오염 부하량

· 폐수 : BOD + COD

$$\frac{\text{—————}}{2} + \text{SS}$$

2

· 오수 : BOD + SS

* 협의에 따라 폐수배출업체는 용수사용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

* 협의에 따라 생활오수만 배출하는 업체는 인원수로 산정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예미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 승인신청서

신 고 인	상호 또는 명칭			
	성 명 (대표자)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사 업 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업 종			주 생산 품
	착 공 예 정 일			준 공 예정일
	건물면적(동별)			부 지 면 적 m²
승인 신청 사항				
<p>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p> <p>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mg/l, COD : mg/l, SS : mg/l 기타 오염물질 :</p> <p>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p>				
<p>「정선군 예미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p> <p>정 선 군 수 귀 하</p>				
※ 구비서류	<p>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p> <p>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p> <p>3. 공장건물 배치도 1부.</p> <p>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p> <p>5.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p> <p>6.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1부.</p> <p>7. 유해물질 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p> <p>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p>			

[별지 제2호서식]

승 인 번 호 제 호	예미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 승인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승인내용 및 조건			
<p>「정선군 예미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처리시설 유입처리를 승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정 선 군 수</p>			

[별지 제4호서식]

승 인 번 호 체 호	배수설비 설치(변경) 승인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승인내용 및 조건			
<p>「정선군 예미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승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정 선 군 수</p>			

[별지 제5호서식]

승 인 번 호 제 호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 신청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p>「정선군 예미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정 선 군 수 귀하</p>			
검 사 번 호 제 호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p>「정선군 예미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정 선 군 수</p>			

[별지 제6호서식]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서

신 고 인	상호 또는 명칭	
	성 명 (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배수설비 사용 개시일		

「정선군 예미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배수설비 사용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

[별지 제7호서식]

납 부 고 지 서 ()월분 유지관리비 부담금			
금 액			
납부기한			
업 체 명			
대 표 자			
납부기관	농협은행정선군지부		
세입과목	특별회계(농공),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부 담 근 거			
수 량	B O D	C O D	S S
m ³ /일	mg/l	mg/l	mg/l
<p>부과일자 :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부담금을 고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정 선 군 수</p>			

영 수 증 ()월분 유지관리비 부담금	
금 액	
납부기한	
업 체 명	
대 표 자	
납부기관	농협은행정선군지부
세입과목	특별회계(농공),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영수일자	
<p>상기와 같이 영수함.</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농협은행 정선군지부장</p>	

영 수 필 통 지 서 ()월분 유지관리비 부담금	
금 액	
납부기한	
업 체 명	
대 표 자	
납부기관	농협은행정선군지부
세입과목	특별회계(농공),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영수일자	
<p>상기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농협은행 정선군지부장</p> <p>정 선 군 수 귀하</p>	

제안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법 개정 사항의 반영과 법률상 근거 없는 규제정비를 위하여 「정선군 예미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제명, 안 제1조~제3조, 안 제13조, 안 제22조, 안 제25조~제28조 및 안 제35조)

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및 중복된 규정 삭제

(안 제26조~제27조 및 안 제30조 삭제, 안 제28조)

다. 용어 일제 정비(수정)

(안 제4조, 안 제12조, 안 제14조, 안 제23조~제24조 및 안 제32조)

라. 별표 및 별지 서식 일제 정비(수정)

- 별표 1~2 및 별지 제1호~제8호서식

제243회 정선군의회(2018. 04. 06.)에서 의결된 정선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4월 16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639호

정선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정선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정선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 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협의

제3조(구성)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 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및 담당으로 한다.
-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 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활동)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 1. 평상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 2. 재난 발생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5조(회의) 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운영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의 임기·위촉·해제·수당지급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정선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군민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정선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나. 기능 (안 제2조)

-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 재난 발생시 인적·물적자원 동원 및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다. 구성 (안 제3조)

-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 포함 30명 이내로 구성
- 당연직 위원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및 담당으로 구성
- 민간위원은 재난 안전관리 분야 유관 기관, 단체, 전문가로 위촉

라. 활동 (안 제4조)

- 평상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 재난 발생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마. 회의 (안 제6조)

- 대규모 재난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

제243회 정선군의회(2018. 04. 06.)에서 의결된 정선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4월 16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640호

정선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 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을 말한다.

제3조(지원 및 대상 등)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군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늦어지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정선군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정선군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강원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대상자 및 신청기간·방법 등에 관하여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관할 구역 읍·면·이장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그 지역 주민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
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
4. 그 밖에 군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재난피해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일으킨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생활안정지원 등) ①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② 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군수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할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④ 군수는 재난의 성질·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재난피해자가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군수는 제6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8조(지급방법) 군수가 제6조제6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9조(환수) 군수는 제6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이 제4조 및 제5조에 위반됨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제10조(재원의 확보)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	------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본인 [] 부모 [] 형제 [] 기타()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휴대전화번호	- -

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 -	통신사명	[]KT []SKT []LGU+ []기타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유선전화	() -	통신사명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 여부	[] 세대주, [] 세대원		가족 수	명 (본인 포함 세대원)		
고등학생 수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도시가스 사용 여부	여 [], 부 []		가입자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피해내용

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							
인명 피해	신고	[] 사망·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업피해(휴업 [] / 폐업 [] / 실직 [])					
	확정	[] 사망·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시설 피해	시설명	①	②	③	④		
	총면적(소유+임차)	①	②	③	④		
	면허·허가·등록 번호	①	②	③	④		
	피해 물량	신고	①	②	③	④	
		확정	①	②	③	④	
	피해 구분	①	②	③	④		
	피해 원인	①	②	③	④		
용자신청 여부	[]	[]	[]	[]			

4. 확인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타 시·군·구 피해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정선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 지원 기준을 조례에 정하도록 2018. 01. 18.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 수습을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나. 지원결정, 지원기준,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제5조)
- 다. 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와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 라. 지급방법 및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9조)
- 마.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안 10조)

제243회 정선군의회(2018. 04. 06.)에서 의결된 정선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4월 16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641호

정선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정선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통합지휘소” 를 “통합지원본부” 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한다)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 이라한다)」 제3조” 를 “한다)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 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통합지휘소의 장” ” 을 ““통합지원본부의 장” ” 으로, “통합지휘소를” 을 “통합지원본부를” 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수행하기” 를 “수행을” 로, “통합지휘소(이하 “통합지휘소” ” 를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 ” 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자를” 을 “사람을” 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기본법 제37조제1항제6호” 를 “법 제37조제1항제6호” 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전파하는” 을 “널리 알리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임시 로” 를 “임시로” 로 한다.

제4조의 제목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을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본법 제3조제1호” 를 “법 제3조제1호” 로, “기본법 제16조제3항” 을 “법 제16조제3항” 으로, “통합지휘소” 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 라 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합지휘소” 를 “통합지원본부” 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전염병” 을 각각 “감염병” 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본법 제36조” 를 “법 제36조” 로, “통합지휘소” 를 “통합지원본부” 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 를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본법 제16조제4항” 을 “법 제16조제4항” 으로, “통합지휘소의” 를 “통합지원본부의” 로, “통합지휘소를” 을 “통합지원본부를”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합지휘소” 를 “통합지원본부” 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통합지휘소” 를 각각 “통합지원본부” 로, 같은 항 중 “별도” 를 “따” 로 한다.

제6조 중 “통합지휘소의 장은 통합지휘소” 를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통합지원본부” 로, “통합지휘소에” 를 “통합지원본부에” 로, “없는 한” 을 “없으면” 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통합지휘소” 를 “통합지원본부” 로, “사전에” 를 “미리”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합지휘소” 를 “통합지원본부” 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을 “법 제3조제1호가목”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 을 “법 제3조제1호나목” 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통합지휘소 설치·운영계획 통보)” 를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계획 통보)”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합 지휘소” 를 “통합지원본부” 로, “기본법 제14조” 를 “법 제14조” 로, “통합지휘소의 장” 을 “통합지원본부의 장” 으로, “통보하여야” 를 “알려야”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통합지휘소의” 를 “통합지원본부의” 로, “통합지휘소를” 을 “통합지원본부를” 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기본법 제34조의5” 를 “법 제34조의5” 로 한다.

제10조 중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 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로 한다.

제11조 중 “기본법 제34조의5” 를 “법 제34조의5” 로 한다.

제12조 중 “제11조 규정” 을 “제11조” 로, “통보하여야” 를 “알려야” 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련기관에 대해서는” 을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련기관에”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없는 한, 기본” 을 “없으면” 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없는 한,” 을 “없으면” 으로, “통보하여야” 를 “알려야” 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통합지휘소의 위치)” 를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통합지휘소” 를 각각 “통합지원본부” 로, 같은 항 중 “통보하여야” 를 “알려야” 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기본법 제34조의5” 를 “법 제34조의5” 로, “통보하여야” 를 “알려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본법 제18조제1항” 을 “법 제18조제1항” 으로, “통보하여야” 를 “알려야” 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을 “필요한”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없는 한,” 을 “없으면” 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 제20조” 를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 로, “통보하여야” 를 “알려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없는 한” 을 “없으면” 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없는 한” 을 “없으면” 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기본법 제37조제1항” 을 “법 제37조제1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없는 한” 을 “없으면” 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전환할” 을 “바꿀”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본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통보하여야” 를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알려야” 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통합지휘소 철수)” 를 “(통합지원본부 철수)”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인수·인계한 후, 통합지휘소” 를 “인수인계 후, 통합지원본부” 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통합지휘소” 를 “통합지원본부” 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통합지휘소” 를 “통합지원본부” 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정선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정선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u>통합지휘소</u>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난현장”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긴급구조지원기관(이하 “재난관련기관”이라 한다)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을 하는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예상지역을 말한다. 2.·3. (생략) 4. “<u>통합지휘소의 장</u>”이란 재난현장에 설치·운영되는 <u>통합지휘소</u>를 지휘하는 정선군 부단체장을 말한다. 5. “현장지휘관”이란 재난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재난현장 통합대응 업무 <u>수행하기</u> 위하여 재난현장 <u>통합지휘소(이하 “통합지휘소”라 한다)</u>의 장이 임 	<p><u>정선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u></p> <p>제 1 조 (목 적) ----- ----- ----- ----- ----- <u>통합지원본부</u> ----- ----- -----</p> <p>제 2 조 (정 의)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 ----- <u>한다</u>) 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u>제3조</u>----- ----- ----- 2.·3. (현행과 같음) 4. “<u>통합지원본부의 장</u>” ----- ----- <u>통합지원</u> <u>본부를</u> ----- ----- 5. ----- ----- ----- <u>수행을</u> ----- <u>통합지</u> <u>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u> - -----

<p>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p>	<p>-.</p>
<p>6. “현장책임자”란 재난관련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재난현장에 출동한 해당기관의 인력 및 장비 등을 지휘·통제하는 <u>자</u>를 말한다.</p>	<p>6. ----- ----- ----- ----- <u>사람을</u> -----.</p>
<p>7. “초기대응담당자”란 재난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여 초동 대처 등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p>	<p><삭 제></p>
<p>8. “재난안전통신망”이란 <u>기본법 제37조제1항제6호</u>에 따라 확보한 현장지휘통신체계 중에서 재난관련기관이 재난현장 통합 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용하는 무선통신망을 말한다.</p>	<p>8. ----- <u>법 제37조 제1항제6호</u>----- ----- ----- -----</p>
<p>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관련기관이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p>	<p>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 ----- ----- ----- -----</p>
<p>1. 상황전파 : 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관련기관에 <u>전파하는 단계</u></p>	<p>1. ----- ----- <u>널리 알리는</u> -----</p>
<p>2.·3. (생략)</p>	<p>2.·3. (현행과 같음)</p>
<p>4. 긴급복구 : 대책본부장 및 재난관련기관이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p>	<p>4. ----- ----- -----</p>

<p>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임시 로 복구하는 단계</p>	<p>----- 임시로 ----- -----</p>
<p><u>제2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현 장지휘관 지정</u></p> <p>제4조(통합지휘소 설치·운영) ① 대책본부장은 <u>기본법 제3조제1 호</u>에 해당되는 재난발생 시,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 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u>기본법 제16 조제3항</u>에 따라 <u>통합지휘소</u>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 할 경우에는 <u>통합지휘소</u>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1. ~ 5. (생 략)</p> <p>6. 신종 <u>전염병</u> 최초 발생 및 법 정 <u>전염병</u> 집단발생</p> <p>7. <u>기타</u> 사회적 과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 요한 재난재해 발생</p> <p>③ 대책본부장은 <u>기본법 제36조</u> 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될 경우 에는 재난현장 통합대응 및 재난 관련기관 간 공조협력을 지원하 기 위하여 <u>통합지휘소</u>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p> <p>제5조(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 ① <u>기본법 제16조제4항</u>에 따른 <u>통합 지휘소</u>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 한 재난관련기관의 현장책임자로 <u>통합지휘소</u>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p>	<p><u>제2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현장지휘관 지정</u></p> <p>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① ----- 법 제3조제1호 ----- ----- 법 제16조제3항----- <u>재난 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 지원본부” 라 한다)</u>-</p> <p>② ----- ----- ----- <u>통합지원본부</u>-----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 <u>감염병</u> ----- <u>감염병</u> -----</p> <p>7. <u>그 밖에</u> ----- ----- -----</p> <p>③ ----- <u>법 제36조</u>----- ----- ----- <u>통합지 원본부</u>-----.</p> <p>제5조(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 무) ① <u>법 제16조제4항</u>----- <u>통 합 지 원 본 부 의</u> ----- ----- <u>통합지원본부를</u> -----.</p>

<p>② <u>통합지휘소</u>는 재난현장 통합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행한다.</p>	<p>② <u>통합지원본부</u>----- ----- -----.</p>
<p>1. ~ 6. (생략)</p> <p>7. <u>기타</u> 재난현장에 대한 각종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 등</p> <p>③ <u>통합지휘소</u>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련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u>통합지휘소</u> 내에 종합상황관리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구지원반 등 실무반을 둘 수 있다.</p> <p>④ <u>통합지휘소</u>의 장은 제3항에 의한 실무반 편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u>별도</u>로 정한다.</p> <p>제6조(업무연락관 파견) <u>통합지휘소의 장</u>은 <u>통합지휘소</u>와 재난관련기관 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장책임자에게 <u>통합지휘소</u>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p> <p>제7조(현장지휘관 지정) ① <u>통합지휘소</u>의 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u>사전</u>에 지정할 수 있다.</p> <p>② <u>통합지휘소</u>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현장지휘관을 지정하고자 하는</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그 밖에</u> ----- -----</p> <p>③ <u>통합지원본부</u>----- ----- ----- <u>통합지원본부</u> -----</p> <p>④ <u>통합지원본부</u>----- ----- <u>따</u>-----.</p> <p>제6조(업무연락관 파견) <u>통합지원본부의 장</u>은 <u>통합지원본부</u>----- ----- <u>통합지원본부</u>에 ----- ----- <u>없 으 면</u>-----</p> <p>제7조(현장지휘관 지정) ① <u>통합지원본부</u>----- ----- <u>미리</u>-----.</p> <p>② <u>통합지원본부</u>----- -----</p>

경우에는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 1.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되는 자연재난 : 재난관련부서의 장
- 2.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되는 사회재난 : 해당 재난대응 업무를 총괄·수행하는 부서의 장

-----.

- 1. 법 제3조제1호가목-----
- 2. 법 제3조제1호나목-----

제8조(통합지휘소 설치·운영계획 통보)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 지휘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재난관련기관에 통합지휘소의 위치, 통합지휘소의 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휘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되는 통합지휘소를 지휘·통제하기 위하여 현장 지휘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9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생략)

② 재난관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해 전달받은 재난현장 상황을 기본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소속기관 등에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제10조(재난지역 주민대피) 현장 지휘관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

제8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계획 통보) ①

----- 통합지원본부-----
----- 법 제14조-----

-----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 알려야 -----.

② 통합지원본부의 -----
----- 통합지원본부를 -----.

제9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현행과 같음)

② -----
----- 법 제34조의5-----
-----.

제10조(재난지역 주민대피)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제 4 0 조-----

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재난현장 출동 준비) 재난 관련기관의 장은 기본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 하는데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에 출동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1조(재난현장 출동 준비) ----- 법 제34조의5 -----

-----.

제12조(재난현장 출동 통보) 재난 관련기관의 장은 제11조 규정에 따라 확보한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출동시키고, 현장지휘관에게 출동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재난현장 출동 통보) ----- 제11조 -----

- 알려야 -----.

제13조(재난현장 출동 요청) ① 현장지휘관은 제12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련기관 이외에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련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재난현장 출동 요청) ① -----

----- 필요한 경우 -----
----- 재난관련기관에 -----
-----.

② 제1항에 따라 현장지휘관으로부터 출동을 요청받은 재난관련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에 즉시 파견하여야 한다.

② -----

----- 없으면, -----

-----.

제15조(재난현장 출동지원) ① (생략)

제15조(재난현장 출동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의해 지원을 요청받

② -----

은 재난관련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현장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교통통제 등을 실시하고, 그 조치결과를 출동 중인 재난관련기관의 현장책임자와 현장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통합지휘소의 위치) ① 현장지휘관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련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휘소를 설치 하여야 한다.

② 현장지휘관은 재난현장에 설치된 통합지휘소의 위치 등을 재난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련기관의 현장책임자는 기본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 유형별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현장지휘관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현장지휘관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기본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재난현장 통제) ① 현장지휘관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련기관에 재난현장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 주변 지역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련

----- 없으
면-----

---- 알려야 --.

제16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①

----- 통합지원본부
-----.

② ----- 통
합지원본부-----
--- 알려야 --.

제17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
보) ①
----- 법 제34조의
5-----

----- 알려야 --.

② -----
----- 법 제18조제1항-----

-- 알려야 --.

제19조(재난현장 통제) ①

----- 필요한

-----.

② -----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제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없으면-----
-----.

제20조(응급의료 활동 지원) ① 「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 관한규칙」 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된 현장응급의료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현장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응급의료 활동 지원) 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

-- 알려야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인력 및 장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
----- 없으면 -----
-----.

제22조(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① (생략)

제22조(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의해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련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

----- 없으면 -----
-----.

제23조(재난안전통신망 긴급복구)

제23조(재난안전통신망 긴급복구)

① 현장지휘관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해 재난안전통신망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역통제단장(관할지역 소방서장)에게 긴급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① -----

----- 법 제37조제1항 -----
-----.

② 제1항에 의해 요청받은 지역통제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② -----
----- 없으면 -----
-----.

<p>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제24조(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현장지휘관은 재난현장 대응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복구체계로 <u>전환할</u>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p> <p>② 현장지휘관은 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등을 <u>기본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통보</u>하여야 한다.</p>	<p>-----.</p> <p>제24조(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 ----- ----- ----- <u>바꿀</u> -----.</p> <p>② ----- ----- ----- <u>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상황실</u> ----- <u>알려야</u> --.</p>
<p>제25조(<u>통합지휘소</u> <u>철수</u>) 현장지휘관은 복구전담조직이 재난현장에 도착하면 긴급 복구상황 등을 <u>인수·인계한 후, 통합지휘소를 철수</u>시킬 수 있다.</p>	<p>제25조(<u>통합지원본부</u> <u>철수</u>) ----- ----- <u>인수인계 후, 통합지원본부</u> -----.</p>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명칭을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 변경 통일함으로써 관련법령과 일치를 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제명 “정선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정선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

나. 명칭변경 (제1조~제22조)

-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 변경

다. 용어변경 (제1조~제22조)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용어순화

제243회 정선군의회(2018. 04. 06.)에서 의결된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4월 16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642호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군수가 설치한 공영주차장(무료, 유료 주차장 모두를 포함한다.) 이용에 장애가 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한 날부터 15일 이상 경과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견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견인된 차량의 경우 「자동차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구역 및 제한 사유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있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15조(이용제한)</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군수가 설치한 공영주차장(무료, 유료 주차장 모두를 포함한다.) 이용에 장애가 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한 날부터 15일 이상 경과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견인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견인된 차량의 경우 「자동차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처리 할 수 있다.</p>

제안이유

정당한 사유없이 공영주차장 내 장기주차하는 차량 증가로 인한 공영 주차장의 이용 불편과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애차량 견인 조치 규정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운영을 기하고자 함.

주요내용

공영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15일이상 주차한 자동차에 대해 이용제한(견인) 조항 신설(안 제15조제2항)

제243회 정선군의회(2018. 04. 06.)에서 의결된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4월 16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643호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으로 한다.

제5조제2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 6.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제6조제3항 중 “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중앙회정선군지부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군의회”를 “농협중앙회정선군지부장, 정선군의회에서 추천한”으로, “위촉한다”를 “위촉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포함되도록 한다”로 한다.

제7조제4호 중 “위원장이”를 “군수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2. ~ 6. (생 략)</p> <p>7. "농산물"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p> <p>8.·9. (생 략)</p> <p>제5조(기금운용) ① (생 략)</p> <p>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p>1. ~ 4. (생 략)</p> <p><신 설></p> <p><신 설></p> <p>③·④ (생 략)</p> <p>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② (생 략)</p> <p>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중앙회정선군지부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u>군의회</u> 의원,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p>	<p>제2조(정의) ----- -----.</p> <p>1.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p> <p>2. ~ 6. (현행과 같음)</p> <p>7.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 가목----- -----.</p> <p>8.·9. (현행과 같음)</p> <p>제5조(기금운용)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u></p> <p>6. <u>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u></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농업기술센터소장</u>----- ----- <u>농협중앙회정선군지부장</u>, <u>정선군의회</u>에서 추천한 -----</p>

<p>가, 농업인단체 대표 및 농업인 중에서 <u>군수가 위촉한다.</u></p> <p>④ (생략)</p> <p>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 3. (생략)</p> <p>4. 기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u>위원장이</u> 부의한 사항</p>	<p>-----</p> <p><u>위촉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포함되도록 한다.</u></p> <p>④ (현행과 같음)</p> <p>제7조(위원회의 기능) -----</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4. -----</p> <p>----- <u>군수가</u> -----</p>
---	---

제안이유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2015.12.23. 개정됨에 따라 정선군 농업·농촌 발전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가. 조례에 명시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안 제2조)
- 나. 기금운용 계획에 포함할 사항으로 연도별 기금구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를 추가함.(안 제5조)
- 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 농협중앙회 정선군 지부장을 당연직에서 위촉직으로 하고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한다.(안 제6조)
- 라. 위원회 심의사항 중 기타 부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서 군수로한다.(안 제7조)

제243회 정선군의회(2018. 04. 06.)에서 의결된 정선군농업인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4월 16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644호

정선군농업인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농업인회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농업인단체”라 함은 정선군에 주사무실을 두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1조의 사업 목적으로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제7조제4항 전단 중 “3년으로 한다”를 “5년으로 하되, 재계약을 통해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1조 중 “위탁관리”를 “위탁”으로, “아니한 사항은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앞은 사항은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u>농업인단체</u>”라 함은 「<u>농촌진흥법</u>」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목적으로 정부기관에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단체 또는 기타 군 단위 단체를 말한다.</p> <p>2. (생략)</p> <p>제7조(운영관리) ① ~ ③ (생략)</p> <p>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u>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u></p> <p>⑤ (생략)</p> <p>제11조(준용) 공공시설의 <u>위탁관리</u> 및 행정재산 등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u>아니한 사항</u>은 「<u>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u>」를 준용한다.</p>	<p>제3조(정의) ----- -----.</p> <p>1. “<u>농업인단체</u>”라 함은 정선군에 주사무실을 두고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u>」 제11조의 사업 목적으로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p> <p>2. (현행과 같음)</p> <p>제7조(운영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5년 <u>으로 하되, 재계약을 통해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u></p> <p>⑤ (현행과 같음)</p> <p>제11조(준용) ----- 위탁 ----- ----- -----<u>않은 사항은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u>」, 「<u>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u>」, 「<u>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u>」 --.</p>

제안이유

가. 정선군농업인회관 운영조례를 관련법 개정애 따라 현행화하고 농업인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이용범위의 확대 및 공유 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정선군농업인회관 사용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1) 비영리 사단법인, 공익법인, 생산자단체 설립으로 운영
- 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1) 위탁기간은 5년, 재계약을 통해 한 번만 갱신(갱신기간은 5년 이내)
- 다. 관리위탁 및 행정재산 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 11조)
 - 1) 「정선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

제243회 정선군의회(2018. 04. 06.)에서 의결된 정선군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4월 16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645호

정선군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조례 폐지조례

정선군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하수도법(법률 제11264호, 일부개정, 2012.2.1.)의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이 위탁에서 관리대행으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정선군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조례를 폐지

규 칙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4월 16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규칙 제1302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 가. 동계올림픽 대외협력 기능 축소에 따른 정원 감원.
 나. 일자리지원, 치매관리 등 정부 정책수요 반영 및 지역현안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능 인력 재배치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을 조정함.

주요내용

- 가. 정선군 지방공무원 직급·직렬별 정원 조정(별표)

○ 총 601명 ⇒ 총 606명 (증 5명)

- 나. 조정내역

○ 분야별

(단위 명)

계	올림픽 대외협력 인력감원	일자리 전담인력 증원	치매안심 센터 인력증원	맞춤형 복지인력 증원	전통시장 육성 인력증원	특사경 전담인력 증원	인허가 전담인력 증원	병해충 예찰방제 인력증원
+5	△4	+2	+1	+2	+1	+1	+1	+1

○ 부서별

(단위 명)

계	환 경 산림과	지 역 경제과	도 시 건축과	동계올림픽 지원단	농 업 기술센터	수질환경 사업소	보건소	신동읍	여량면
+5	+4	+3	+2	△4	+1	△4	+1	+1	+1

정선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4월 16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규칙 제1303호

정선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지방보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지방의무사무관”을 “지방보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직급) 본청 실장·과장· 단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명 한다. 1. ~ 6. (생략) 7. <u>규제개혁추진단장: 지방행정 주사</u>	제3조(직급) ----- -----. 1. ~ 6. (현행과 같음) <u><삭제></u>
제8조(직급) ① 정선군보건소에 두는 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 관 또는 <u>지방보건사무관·지방 간호사무관·지방의무사무관</u> 으 로 임명한다. ②·③ (생략)	제8조(직급) ① ----- ----- <u>지방보건사무관·지방간호사무 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u>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안이유

담당 신설·폐지·부서변경 등 군정 주요현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를 개편함에 따라 부서별 업무조정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한시기한 종료에 따른 규제개혁추진단장의 직급 삭제 (안 제3조)
- 나. 본청 과장·단장의 분장사무 조정 (안 별표1)
 - 환경정화 업무 → 환경산림과 흡수
 - 일자리 지원 업무 → 지역경제과 신규 분장
 - 올림픽 청산 업무 → 동계올림픽지원단 신규 분장
 - 올림픽 대외협력 업무 → 폐지
- 다. 수질환경사업소장의 분장사무 조정 (안 별표 3)
 - 환경정화 업무 → 환경산림과로 이관

정선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4월 16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규칙 제1304호

정선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일시중지 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일정기간 동안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일시 보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 2. "중지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 3. "시정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관계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지방세관계법 및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고충민원

제4조(고충민원서류의 접수) ①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한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기한 연장통지서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고충민원 처리안내) 민원인이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예정기한, 처리절차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7조(세무부서 의견조회)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에 고충민원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세무부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장은 의견서를 작성한 후 당초 처분에 관한 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 의견 및 처리결과 제출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열람)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직원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질문하는 일
2. 세무부서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이 소지하고 있는 장부·서류·그 밖의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일
3.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및 상황 등을 확인하는 일

③ 납세자보호관은 과세자료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증빙자료의 수집)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접수 시 처리 담당 세무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음을 민원인에게 알리고 고충민원신청서에 서명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자료 중 행정기관 발급자료 및 지방세

전산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민원인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처리결과 통지)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고충민원 검토(의결)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고충민원 심의결과 통보에 의결서를 첨부하여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지체 없이 그 수용여부를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충민원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통보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납세자보호관은 제3항에 따른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제11조(조사기간 연장신청)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 제출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연장신청 의견청취 등) ①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 접수 사실 통보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의견 송부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종료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기간 연장 여부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1조에 따른 연장신청을 결정할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통보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세무부서장은 조례 제20조제2항의 조사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처리결과 통보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최종 처리결과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연기신청 의견청취 등)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연기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접수사실을 별지 제16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신청 접수 통지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 의견을 별지 제17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신청에 따른 의견 제출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5조(연기신청결정의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3조에 따른 연기 신청을 결정한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보서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연기신청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19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최종 처리결과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권리보호 요청

제16조(권리보호요청의 접수) ①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신청서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별지 제21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7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8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 연장통지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절차)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 사항을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 사항(조례 제2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을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지체 없이 그 수용여부를 별지 제25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통보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이 시정요구를 수용하는 경우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권리보호요청 처리 협조)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7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서에 따라 세무부서의 의견 및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 따른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의견 및 관련 자료를 별지 제28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에 따라 지체 없이 회신하여 권리보호요청이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사실관계 확인)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해당 납세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지방세 관계법령 등에 위반된 조사 및 재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받은 납세자로부터 조례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조사(이하 “위반된 조사 등”이라 한다)의 권리보호요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참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사전통지서
2. 세무조사결과통지서
3. 조사계획서
4. 조사이력사항
5. 그 밖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에 따른 위반된 조사 등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제29호서식의 세무조사 관련 자료요구서에 따라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장은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 ③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④ 납세자보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세무조사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세무조사 일시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를 일시중지하여야 한다.
- 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후 납세자가 위반된 조사 등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제시하는 종전의 세무조사사전통지서 등 관련 서류, 정황 및 지방세관계법 등을 검토하여 납세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별지 제30호서식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세무조사 일시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를 일시중지하여야 한다.
- ⑥ 납세자보호관은 위반된 조사 등에 대한 처리결과 및 조치사항을 제18조에 따라 납세자 및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제4항 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범칙조사, 세수일실·조세포탈의 여지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로서 세무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세무조사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일시중지를 요청하지 않는다.
- ⑧ 제4항부터 제5항에 따라 세무조사가 일시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기간만큼 조사기간이 연장된다.

제5장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 제22조(기한의 연장) ① 조례 제34조에 따른 기한의 연장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접수사실을 별지 제31호서식(납부기한 연장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지방세 납부 기한연장 신청 접수 통보)의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 접수 통보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만료 3일 전에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기한의 연장 신청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 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납부기한 연장은 별지 제34호서식의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의견 통보)의 지방세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의견 통보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해당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5조에 따른 기한의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지방세 () 기한연장 승인 여부 통지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기한의 연장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필

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36호서식의 지방세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결과 통보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5조에 따른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승인 여부 통지)의 지방세 () 기한연장 승인 여부 통지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가산세의 감면) ① 가산세의 감면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가산세 감면신청 접수사실을 별지 제37호서식의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신청 접수 통보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가산세 감면신청 접수사실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38호서식의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신청에 대한 의견서 제출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7조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등의 결과(승인 여부) 통보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가산세의 감면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40호서식의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등의 처리 결과 통보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⑤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7조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결과(승인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등의 결과(승인 여부) 통지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징수유예 등) ①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징수유예 신청 접수사실을 별지 제41호서식의 [] 징수유예등([] 체납처분유예) 신청 접수 통보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에 대한 접수사실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의 [] 징수유예등([] 체납처분유예) 신청에 대한 의견 통보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부서장은 「지방세징수법」 제27조 및 같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 제공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통보한다.

-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9조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 징수유예등([] 체납처분유예) 결정 통보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납세담보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44호

서식의 징수유예등(채납처분유예) 처리 결과 통보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9조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채납처분 유예 승인 여부를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의 [] 징수유예 등([] 채납처분유예) 결과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담보의 제공을 위하여 기한 내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담보 제공 받은 후 지체 없이 통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3호서식]

정 선 군

수신
(경유)

제목 **고충민원 처리기한 연장통지서**

「정선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 규칙」 제5조에 따라, 귀하(귀 법인)가 ○○.○○.○○ 제출한 고충민원의 처리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당초처리기간		. . .	처리에정기한	. . .
기한연장사유				

끝.

정 선 군 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별지 제4호서식]

정 선 군

수신 세무회계과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

「정선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충민원이 제기되어 귀 부서의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니 ○○.○○.○○까지 당초 처분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당해 고충의 내용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시정하고 그 결과를 ○○.○○.○○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고 충 내 용				

붙임 고충민원서 사본 1부. 끝.

정 선 군 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별지 제5호서식]

정 선 군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고충민원 의견 및 처리결과 제출**

「정선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납세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청일자	. . .	처리일자	. . .
고충내용 (요 약)				
00과 의 견	검토의견			
	처리결과 (직권시정 하였을 경우)			

붙임 고충민원서류 사본 1부. 끝.

정 선 군 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m²)

■ [별지 제6호서식]

정 선 군

수신 세무회계과장

(경유)

제목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아래 민원인으로부터 고충민원이 제기되어 「정선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귀 부서의 과세자료에 대하여 열람·제출을 요구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신청일자	. . .
고 충 내 용			
요 구 자 료			

끝.

정 선 군 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7호서식]

정 선 군

수신

(경유)

제목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

귀하(귀 법인)가 ○○.○○.○○ 제출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정선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민원내용				
처리내용				

끝.

정 선 군 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8호서식]

정 선 군

수신 세무회계과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 검토(의결)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정선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규정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통보하오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고충내용				
시정요구 내용				

(붙임: 고충민원의결서) 끝.

정 선 군 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별지 제9호서식]

정 선 군

수신 세무회계과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 심의결과 통보**

「정선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단서 규정에 의거 아래의 고충민원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납 세 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고충민원 내용				
의결 내용				

붙임 의결서 1부. 끝.

정 선 군 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10호서식]

정 선 군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고충민원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통보**

「정선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권리보호요청 사항에 대한 결과를 통보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고충내용		
처 리 결 과	수용여부	여 / 부
	처리사유	

끝.

정 선 군 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별지 제11호서식]

정 선 군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 제출

「정선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납 세 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신청 내용	조사대상 세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끝.

정 선 군 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12호서식]

정 선 군

수신 세무회계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 접수 사실 통보

「정선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 접수 사실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기간연장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신청 내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붙임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 1부. 끝.

정 선 군 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별지 제13호서식]

정 선 군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의견 송부

「정선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세무조사 연장 신청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신청 내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검토 의견	연장 여부			
	사유			

끝.

정 선 군 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14호서식]

정 선 군

수신 세무회계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통보

「정선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해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신청내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결정사항	연장 여부	
	사유	
	연장된 조사기간	~

끝.

정 선 군 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15호서식]

정 선 군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처리결과 통보

「정선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 납세자가 신청한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해 그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신청 내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처리 사항	연장 여부			
	사유			
	연장된 조사기간	~		

끝.

정 선 군 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m²)

■ [별지 제16호서식]

정 선 군

수신 세무회계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신청 접수 통지

「정선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 접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접 수 사 항	당초 조사기간			
	연기 신청기간			
	연기 신청사유			

끝.

정 선 군 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별지 제17호서식]

정 선 군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신청에 따른 의견 제출

「정선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연기신청 기간				
○○과 의견				

끝.

정 선 군 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별지 제18호서식]

정 선 군

수신 세무회계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보서

「정선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신청 내용	당초조사기간			
	연기신청기간			
	연기신청사유			
결정 사항	연기여부			
	연기된 조사기간			
	결정사유			

끝.

정 선 군 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별지 제19호서식]

정 선 군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처리결과 통보서

「정선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신청 내용	당초조사기간			
	연기신청기간			
	연기신청사유			
처리결과				

끝.

정 선 군 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별지 제20호서식]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성별(남/여)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권리보호 대상	① 요청기관	② 세무조사	③ 세정행정	④ 체납처분
---------	--------	--------	--------	--------

⑤ 권리보호

요청내용 ※ 작성할 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합니다.

「정선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 자	성명	생년월일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⑥ 첨부서류

1. 예고 통지서 등 주무서서로부터 통지 받은 서류
2. 권리보호요청 내용을 증명하거나 보완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297mm×210mm(백상지 80g/㎡)

■ [별지 제22호서식]

정 선 군

수신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 연장통지

귀하가 ○○.○○.○○ 제출한 권리보호요청 신청에 대하여 「정선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기간이 다음과 같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처 리 기 간 연 장	기간연장	당초기간 :	연장기간 :
	연장 사유		

끝.

정 선 군 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별지 제23호서식]

정 선 군

수신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

귀하가 ○○.○○.○○ 제출한 권리보호요청 신청서에 대하여 「정선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처리내용				
처리사유				

끝.

정 선 군 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별지 제24호서식]

정 선 군

수신 세무회계과장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정선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규정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통보하오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납세자 권리침해 행위				
시정요구 내용				

끝.

정 선 군 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별지 제25호서식]

정 선 군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통보

「정선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권리보호요청 사항에 대한 결과를 통보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처 리 결 과	수용여부	여 / 부
	처리사유	

끝.

정 선 군 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별지 제26호서식]

정 선 군

수신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

「정선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권리보호요청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처리결과				
처리사유				

끝.

정 선 군 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별지 제27호서식]

정 선 군

수신 세무회계과장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서

「정선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어 귀 부서의 의견 및 자료를 요청하니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필요한 자료 명세				

붙임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1부. 끝.

정 선 군 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별지 제28호서식]

정 선 군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정선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규정에 따라 아래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송부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내용				
○○과 검토의견				

끝.

정 선 군 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m²)]

■ [별지 제29호서식]

정 선 군

수신 세무회계과장

(경유)

제목 세무조사 관련 자료요구서

「정선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규정에 따라 아래의 세무조사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오니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필요한 자료 명세	1 조사대상세목			
	2 조사대상기간			
	3 조 사 사 유			
	4 기 타			

끝.

정 선 군 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별지 제30호서식]

정 선 군

수신 세무회계과장
(경유)

제목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

「정선군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제5항)에 규정에 따라 아래 세무조사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니 세무조사를 일시중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조사기간			조사대상 과세년도	
조 사 반			조 사 유 형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사유				
세무조사 중지기간				

끝.

정 선 군 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m²)

■ [별지 제31호서식]

정 선 군

수신 세무회계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 접수 통보

「정선군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신청내용	기한연장 대상				
	당초 기한 년 월 일까지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 년 월 일까지			
	연장 신청 사유				

끝.

정 선 군 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m²)

■ [별지 제32호서식]

정 선 군

수신 세무회계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납부 기한연장 신청 접수 통보

「정선군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방세 납부기한연장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지방세의 내용

주요세목	과세물건(대상)	납부기한	세액	신청금액
연장 받으려는 기한	년 월 일까지			
연장 신청 사유				

끝.

정 선 군 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33호서식]

정 선 군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의견 통보

「정선군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의견을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의견	기한연장 대상			
	결정사유			
	연장 기한	년	월	일 까지(일간)

끝.

정 선 군 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m²)

■ [별지 제34호서식]

정 선 군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의견 통보

「정선군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의견을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의견	승인 여부				
	연장 기한	년 월 일 까지(일간)			
	승인(불승인) 사유				
	분납기한 및 금액	횟수	주요세목	분납기한	분납금액
		1회			
2회					
3회					

끝.

정 선 군 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J210mm×297mm(백상지 80g/m²)

■ [별지 제35호서식]

정 선 군

수신 세무회계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 기한연장 승인 여부 통지

「정선군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귀하(귀 법인)의 지방세 ()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통지내역	기한연장 대상			
	당초기한			
	승인여부			
	연장 기한	년	월	일 까지(일간)
	승인(불승인)사유			

끝.

정 선 군 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36호서식]

정 선 군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결과 통보

「정선군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의견	기한연장 대상			
	결정사유			
	연장 기한	년	월	일 까지(일간)

끝.

정 선 군 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m²)

■ [별지 제38호서식]

정 선 군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신청에 대한 의견서 제출

「정선군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감면 여부 의견			
감면(감면불가) 사유			
감면 승인할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가산세	원
감면할 가산세와 관계되는 세목과 부과내역		세	년도 월 원

끝.

정 선 군 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39호서식]

정 선 군

수신 세무회계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등의 결과(승인 여부) 통보

「정선군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등의 결과(승인 여부)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감면 여부(승인 여부)				
감면(감면불가) 사유				
감면 승인된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가산세	원	
감면된 가산세와 관계되는 세목과 부과내역		세	년도	월 원

끝.

정 선 군 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40호서식]

정 선 군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등의 처리 결과 통보

「정선군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등의 승인에 따른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감면 처리된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가산세 원	
감면된 가산세와 관계되는 세목과 부과내역		세	년도 월 원
처리연월일		년	월 일

끝.

정 선 군 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41호서식]

정 선 군

수신 세무회계과장

(경유)

제 목 [] 징수유예등 신청 접수 통보
 [] 체납처분유예

「정선군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방세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세목	과세연도	과세번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	가산금	
신청 내용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사유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납부기한 및 분납금액						
	횟수	연도	세목	납부기한	분납금액 (A+B)	지방세(A)	가산금(B)
	1회						
	2회						
	3회						

붙임 신청서 사본 1부. 끝.

정 선 군 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제안이유

「정선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가. 고충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제4조부터 안제10조까지)
- 나.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제11조부터 안제15조까지)
- 다. 납세자의 권리보호 요청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제16조부터 안제21조까지)
- 라. 지방세의 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제22조부터 안제24조까지)